

-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무상양여된 국·공유지를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을 현행 100%에서 80%이하로 인하해 줄 수 있도록 관련조례의 개정을 각 시도에 권고해 옴에 따라, 시가 동조례를 개정하여 국·공유지 매각대금의 20%를 할인한 금액으로 매각해 주고자 하는 것은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 다만, 건교부가 제시한 인하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우리시의 재정여건·국고지원액·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 가능액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고려하여 책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 - 또한,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매각대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조례개정 시행 이후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최초로 고시되는 사업지구와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지구가 확대되어 주거환경개선계획이 변경 고시되는 지구의 추가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국한하고 있어, 이미 사업을 완료(22개 지구)한 지구는 차치하고, 입법예고시 의견수렴결과 제기되었듯이 사업시행중인 지구(67개 지구)로서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였거나 분납 중인 토지는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받게 해 달라는 민원이 강력히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, 시의 재정여건,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(관할 지자체에서 검토처리), 시 법률고문의 자문결과(소급적용하여 환불할 의무없음), 형평성시비 우려 등을 종합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소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
 - 기타 다른 조문의 개정은 도시계획법,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당연 필요하다고 사료됨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 5. 토론요지 : 없음
 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소위원회 구성 안함
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중 “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 목의 시설에”를 “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”로 한다.

제26조중 “제8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”를 “제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”으로 한다.

제27조중 “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”을 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은”으로 한다.

제31조중 “당해 토지에 연고를 가지고”를 “당해 토지를 점유·사용하고”로 한다.

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의 토지매각대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 금액에서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토지의 매각가격결정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최초 고시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. 다만,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가 확대되어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이 변경 고시되는 지구의 추가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864
----------	-----

2001년 6월 일

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5월 4일,
서울특별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1년 5월 7일